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2021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 2) 대 표 자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장세용
- 3) 소 재 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 4) 출연예정액 : 5억원
- 5) 출연금 사용처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출연금 및 운영비

나. 주요 사업

-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
 - 연중 다품목 생산-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개편 및 농업생산 지속을 위한 생산농가 교육 등 각종 사업 추진

2)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 직매장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
-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시장의 요구와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부가가치를 증대

3)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 공급·물류·배송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먹거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

다. 출연의 필요성

1)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 구미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계된 농식품의 공급과 지역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하므로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한 재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관리·운영 필요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 직매장,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재단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 복리 증진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4)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식품가공산업 및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의 직접일자리 200개 및 간접일자리 5,000개 창출로 연 2,500억원의 순환경제효과 유발

라. 출연금액 산출 내역(2021년)

1) 출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재단설립 출연금	비고
475	266	104	5	100	

2) 재단 인력운영 계획 및 인건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직급(인원) (공무원 직급기준 적용)	직책	업무분장	인건비	비고
5급(1)	센터장	업무총괄	44	
6급(1)	경영기획실장	회계, 기획	36	
7급(2)	기획생산팀장 직매장팀장	농가조직화, 농가교육 총괄 직매장 업무 총괄	60	
8급(2)	기획생산팀원 직매장팀원	농가조직화, 농가교육 등 매장관리, 농가관리	54	
계약직(4)	직매장팀원	계산, 매장관리	72	
계(10)			266	

※ 2021년 4월 재단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
재단 및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운영 필수 인력

3)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104	
사업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5	
계	109	

※ 일반운영비는 인건비의 39.1%로 산정
사업비는 인건비의 1.7%로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민법」 제32조
-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구성 및 업무
분장(붙임)

[붙임]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 구성〉



구분	센터장	기획경영					기획생산		직매장			급식센터				총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인원 (명)	1	1	2	1	2	2	2	3	3	12	1	3	7	10	1	2	10	13	24	50

〈업무 분장〉

구분		세부업무
센터장		업무총괄
기획경영실	실장	센터경영기획 및 경영관리
	총무회계팀	센터회계, 인사 및 노무관리, 직원관리
	홍보마케팅	사업기획, 홍보, 마케팅, 레스토랑 관리
기획생산팀	직매장	농가교육, 수요예측, 품목관리
	학교, 공공	
직매장	매장관리	매장관리, 소비자관리, 농가관리
	정산	계산, 매장관리
레스토랑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에 위탁	
급식 (학교, 공공, 공단 등)	실장	업무총괄
	행정업무(회계)	학교 등 수요처 행정업무, 농가정산
	수발주	농산, 축·수산, 가공식품 등 농가 및 업체관리, 수발주
	물류관리	배송
	품질관리	소분, 소포장 등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유통과
입 안 자	과 장	김 성 호
	담 당	엄 성 렬
	담 당 자	정 지 원 (480-5922)